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259
등록일자	2016.1.5.
결재일자	2016.1.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복지행정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
조원석	최우순	박정숙	01/05 오제성
협 조			

2016년도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계획



서 대 문 구
복지정책과

2016년도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계획

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광복회 등 9개 국가 유공자 단체(보훈단체) 및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애국정신함양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지원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2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5조
- 「범죄피해자보호법」 제5조 및 제34조
-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단체 지원)

II 지원개요 및 방향

■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광복회 외 8개 보훈단체,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
- 지원범위 :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가능
- 지원방법 : 매 반기별 지원(※ 예산 조기집행 등 사유 발생시 변동 가능)
- 소요예산 : 137,000천원

■ 지원방향

- 보훈단체에서 행하는 사무, 사업, 행사에 대하여 권장·지원
 - 회원관리, 현충원참배, 전적지순례, 안보활동, 봉사활동 등
-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사업 제한
-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원칙에 의거 보훈단체 예산집행 관리 철저
 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적 고양
 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금지
 - 불법시위 주최·주도 및 참여 금지 등
- 보조금 예산사용의 적법한 집행유도 및 지속관리
- 동일사업 지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
 - 3년 경과후 성과 평가를 통한 지속 지원여부 결정

III 세부지원계획

■ 2016년 예산편성 : **금137,000,000원(금일억삼천칠백만원)**

■ 예산과목 :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, 종합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, 보훈 회관 및 단체 등 지원, 민간이전,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

■ 지원현황

연번	단체명	대표자	연락처	회원수		지원금액 (천원)	비고
				단체기준	보훈청기준		
	계			2,718	5,017	137,000	
1	광복회	홍의찬	338-4376	65	79	7,000	
2	상이군경회	김양선	393-2952	565	594	14,000	
3	전몰군경미망인회	최혜숙	393-2952	290	296	13,000	
4	전몰군경유족회	박건국	392-2952	277	295	13,000	
5	무공수훈자회	류연벽	322-2146	161	687	15,000	
6	6.25참전유공자회	구장희	394-0625	350	1,056	11,000	

7	월남전참전자회	김승겸	323-0107	428	1,326	10,000	
8	고엽제전우회	금기연	323-5114	510	662	10,000	
9	특수임무유공자회	박영은	306-8240	72	22	4,000	
10	서부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	김갑식	3270-4504			40,000	

■ 운영방식

-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작성 제출
 - 보조금 신청 및 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 등록하여 3년간 관리
 - ※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
- 성과평가 관리 실시
 -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(3년)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,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여부 판단 후 보조
 -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

■ 운영보조금 관리

-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운영보조금 관리지침 수립(붙임1)
- 각 단체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방법(집행/정산) 등 교육

IV 행정사항

■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및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안내 후

보조사업 신청서(붙임2) 신청서 접수 : 1월 말

■ 신청서 검토 후 단체별 예산지원 및 정산 : 매 반기별

■ 보조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사업 평가실시 : 익년 1월 중

붙임 1. 2016년 운영보조금 관리지침 1부.

2. 보조사업 신청서 및 성과평가 체크리스트 1부. 끝.